

2025, 2학기 회사법 리포트 과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지배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

과목명	회사법
담당교수님	서완석
학과	법학과
학번, 이름	202432324 공지윤 202432375 유채연 202432413 최유민 202432419 표수현

목차

I. 서론

II. 주주유한책임의 개념과 한계

III. 지배권 기반 책임제

III-1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필요성

III-2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목적 및 효과

IV. 충실의무

IV-1 기존 충실의무의 의미 및 지배주주와의 연관성

IV-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관련 판례 검토

IV-3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적용 논의 및 필요성

V. 견해 및 보완적 제안

V-1 기본 입장 정리

V-2 보완적 제안

V-3 예상 효과

VI - 결론

VII - 소감 및 평가

VIII - 참고문헌

IX -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I. 서론

현행 법률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종종 보이지 않는 손자국이 남는다. 결정의 흔적은 분명하지만 책임 주체는 흐릿하다. 이런 주주의 유한책임 문제는 그 흐릿한 경계 속에서 출발한다.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책임의 불균형 사이에서 지배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지난 7월 한국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주주의 책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상법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상법은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다.¹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단점을 파악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지배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법 제도적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완석 교수는 주주유한책임 제도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핵심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한계를 가지고 기존의 법인격부인론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고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서완석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주주유한책임의 개념과 문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지배주주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가장 실효적인 지배주주의 책임을 확대하는 이론을 분석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개선 방향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II. 주주유한책임 제도의 개념과 한계

주주유한책임 제도는 상법 제331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주주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원칙은 1807년의 프랑스 상법전 이래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아왔으며 이는 생산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업이 다수 대리인의 전문화된 능력과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³ 주식회

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5. 7. 22.

² 이윤석, 「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Vol.38 No.2, 한국상사법학회, 2019.08, p277-308

³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 Tort, Contract, and Other Common Law Problems in Substantive Law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Company), p653-

사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주주 개인의 재산과 주식회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되고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에 한하여 책임지므로 회사가 파산해도 개인 재산은 보호된다. 그리고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므로 많은 사람이 소액 투자를 하여 대규모 자본조달 구조가 가능하고 유한책임으로 인해 투자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져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또한 주식 투자의 위험이 제한되어 주식 양도와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결정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인다.

주주유한책임 제도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주의 책임이 투자금 한도에 국한됨으로써 수많은 소액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자본의 조달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 즉 자신의 원금만큼만 책임이 있다는 점이 투자의 위험도가 적어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요소로 작용하여 수월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것이다.⁵ 이렇게 한국의 많은 상장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먼저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주주유한책임은 주주의 책임을 인수한 주식의 액면가에 한하여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도하게 소액주주의 무책임한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경영진의 부실 관리로 인해 큰 손실을 보더라도 소액주주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회사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카카오뱅크 경영진의 스톡옵션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물적 분할이 한국에서만 많이 확산하며, 소액주주를 가난하게 만들고 지배주주에게만 안정적인 지배력을 보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례는 소액 주주의 통제력이 제한된 구조에서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외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⁶

662(1987).

⁴ 이장욱,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21.

⁵ 매일경제, [생활 속 회계이야기] 책임소재 분명한 주식회사, 투자금 모으기 '딱', <https://www.mk.co.kr/news/economy/9908371?utm>, 2021. 06. 11.

⁶ 매거진 한경, 정채희 기자, '쪼개기 상장·떡튀'...카카오 소액주주 잔혹사, 2022.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59828?sid=101>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또 이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회사가 장기적인 목표 실현보다는 즉각적인 이익 실현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주유한책임제도는 자신의 출자액에만 책임을 지므로 지배주주나 법인주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을 외부로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주는 위험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가지면서도 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는 당연히 채권자가 부담할 몫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⁷ 그러나 법인격부인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책임을 확장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법이론이 논거된다.

III. 지배권 기반 책임제

1.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필요성

본 논문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은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서완석 교수는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원칙이 지배주주에 의해 남용되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비판한다. 지배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만 책임은 자신의 출자금에 한하여 부담하므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를 주주유한책임으로 인한 ‘기업 위험의 외부화’가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서완석 교수는 현행 법체계가 주주유한책임의 문제에 미약하게 대응한다고 지적하며 전통적 대응장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역시 언급한다. 전통적 대응 장치로는 법인격부인론이 대표적인데, 법적 책임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주주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하므로 실질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요건이 모호하여 예측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책임 회피를 막기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비례 책임제는 정보 접근성이 높고 통제력 있는 지배주주와 단순 투자자인 소액주주 간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또한, 소송에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주주유한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하여 서완석 교수는 지배권 기반 책임제를 제시한다. 이는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지배주주에 한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나 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소액주주는 주주유한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권 기반 책임제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

⁷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손해배상(기)]

2.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목적 및 효과

지배주주는 회사의 기업 지배체제에서 주요한 의사결정과 일상적 경영 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는 회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 질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회사 지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며 타 주주가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⁸ 그러다 보니 지배주주가 자기의 목적을 회사 본래의 목적에 대치하여 변질시킬 수 있으며, 회사 이익과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위험 이른바 가해할 가능성을 가진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이사의 지위에서 사익 추구의 행위를 할 때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더라도 상법 조항은 지배주주라는 지위에 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임원 지위에 대한 책임 부과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⁹ 즉, 현행법상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것이다.

자본 다수결이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¹⁰ 이 원칙 때문에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주권 구조에서 지배주주가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지만 지배주주도 결국 주주일 뿐이므로 주주유한책임을 적용받는다. 주주유한책임 때문에 책임이 제한되는 상황이기에 ‘도덕적 해이’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배권 기반 책임제이다.

지배권 기반 책임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배권의 책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배주주는 소액주주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충실의무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지배권 기반 책임제와 유사한 지배주주 책임 이론이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고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다. 회사 또는 주주와 제3자에 대한 지배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면 지배주주가 회사와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에게 충실의무를 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¹¹ 이에, 미국이나 독일의 법제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제도를 명문의 규정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 판례법은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부과하는 충실의무를 지배주주에게도 부과하여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소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지배주주가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지배주주가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한다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간 불공평한 이익 분배까지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미국법상으로는 주의의무와 경영 판단 원칙을 추정하여 ‘자기거래와 관련되는 자가 당해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⁸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p248

⁹ 송호신, 한양법학 제23집, 2008, p254

¹⁰ 미오도카 미치오, “주주총회에서의 다수결”, 1952, p29

¹¹ 송호신, 한양법학 제23집, 2008, p282

공정하였는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입증책임을 가지고 추정을 반복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¹² 즉, 지배주주에 충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소수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권의 남용을 억제, 자기거래 및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 지배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주 간 불공평한 이익 분배를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충실의무

1. 기존 충실의무의 의미 및 지배주주와의 연관성

충실의무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상법 제382조의3). 구체적으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good faith)하고 공정(fairness)하게 하고, 그 지위를 개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¹³

기존 충실의무는 상법 제 382조3항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¹⁴ 와 같이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상법 제 382조3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였으나 이사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어야 함이 대두됨에 따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진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실제로 2025년 7월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질 것으로 개정된 만큼 주주의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의 시초도 결국 지배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 충돌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한국기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이며, 문제의 핵심은 거래에서 이사보다는 지배주주에 있다. 또한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결정은 이사회가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해 실행되며, 이사는 그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상법 제382조3항의 개정안은 현실에서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인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¹⁵

¹² 문정혜, 주주행동주의 규제를 위한 충실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2009, p368-389

¹³ 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상법 : 회사 3」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p.229.

¹⁴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50722,20991,20250722\)](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50722,20991,20250722)), 제382조

¹⁵ 이현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미국의 논의 및 시사점 검토, 2025, p.1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관련 판례 검토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배주주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소수주주에 대해 신인 제4장 상법개정안 검토 및 개선방안 143 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Entire Fairness(전체공정성 기준)'가 적용되어,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Weinberger v. UOP, Inc. (1983) 판결에서는 대주주의 합병거래에 Entire Fairness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수주주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였다.¹⁶

이를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본다면 지배주주 충실의무부과에 대한 의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바가 있다. Sinclair는 자회사 Sinven의 주식 97%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배당금 지급과 사업 확장 기회 거부에 대해서는 자기거래(self-dealing)가 아니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했으나, Sinclair의 완전자회사 International과 Sinven 간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거래로 판단하였다. International이 계약상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고 최소 구매량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완전한 공정성(intrinsic fairness)" 기준을 적용하여 Sinclair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¹⁷ 이처럼 미국의 판례법은 지배주주가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여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얻는 경우 이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그 거래가 전반적으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그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희생시키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적용 논의 및 필요성

한편, 현행 상법으로도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 401조 2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만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당조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는 업무를 이사에게 지시하고 이를 수용한 이사가 동법 제401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삼자인 소수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그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국 소수주주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부담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¹⁸

¹⁶ 이현균,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p.142

¹⁷ JUSTIA US LAW, <https://law.justia.com/cases/delaware/supreme-court/1971/280-a-2d-717-3.html>

¹⁸ 김재범,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한국사법학회, 2015), p.188-189.

따라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지배주주에 관한 법이 바람직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물론 유한책임회사가 가지는 여러 이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보편적인 주식회사 운영과 우리나라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편적 특징과 상황에 따라 맞춘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견해 및 발전적 제안

1. 기본입장 정리

현재 대한민국은 상법 제 331 조에서 규정하여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출자자가 본인이 출자한 재산과, 개인 재산 또한 채무 변제의 대상이 되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의 주주 유한 책임제는 출자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폭넓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고, 주식의 동질성을 보증하는 것으로부터 다수의 투자자가 참가하는 주식시장을 설립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많은 영리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19 20}

나아가 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유한책임회사의 성장과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또한 발전을 견인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경영체제 확립을 통하여 시장경제에서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책임 제도 하에서 책임의 한정이라는 제도적 편의성 뒤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주주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주주의 위험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지배주주가 기업의 손실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채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과, 소수 주주의 재산권 침해, 거시적으로는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¹⁹ Seong-Ho Seo, Jin-Hwan Kim, 株主의 有限責任과 債權者保護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2010, p130.

²⁰ 2007 년도 국세청정보자료에 의하면, 2006 년도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수는 340,006 으로 가동법인 총수의 91.3%, 가동 중의 순수상법상 회사의 95.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됨. 이와 관련하여 서성호, "일본의 회사법상 지분회사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 23 권 1 호, (2009 년 3 월)p184 참조.

이런 현상은 최근 '홈플러스 MBK partners 사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 Partners 가 인수 이후 위기에 처한 회사가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고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대주주 MBK 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홈플러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라며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 가 홈플러스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급작스레 기업회생절차부터 신청한 것은 더 손해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²¹ 이런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보다 본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손실은 채권자, 사회 전체가 부담하기도 한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권에 기초한 책임제도는 지배주주가 가진 지배력과 통제력을 법적 책임의 기준으로 삼아서 회사의 불법행위나 경영 실패의 경우 유한책임이 가지는 범위보다 넓게 책임을 지게 하려는 제도적 구상으로, 주주유한책임의 효용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절충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에서는 주주유한책임이 가지는 효용성을 무시하지 않고서도 유한책임의 전면적 철폐 대신 지배권에 기초한 책임제도를 통해 실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유익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보완적 제안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에서 지배권 기반 책임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현대 사회에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배 주주에게 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강한 충실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고 외부화 된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그 결과에 대해 설명책임을 지며, 이는 지배주주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²²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사는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할 의무 즉,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배임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지배주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회사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로써 이사의 법적책임은 명확히 인정되는 반면 주주는 회사 영업의 직접 집행 주체가

²¹ 명지예기자, 매일경제, "개인들도 수백억원 손실 가능성...휴지조각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2025.3.5

<https://v.daum.net/v/20250305204501645>

²² 양만식, 우리나라 법상 규정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36(3), 2022, p121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지배주주에게 이사 수준의 높은 충실의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 위험 부담을 가중해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생긴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은 감시 의무, 정보공개 의무, 경영 투명성 확보 의무 등과 같은 별도의 구성 요건을 신설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배주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지분 이상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다른 반대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²⁴

간접적인 방식을 추가하여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과 소수주주의 감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도 지배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책임론과 지배권 기반책임론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

사용자 책임론은 민법 제 756 조를 근거로 하여 지배주주를 회사의 사용자로 간주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접근이다. 이론적, 실정법적으로도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지배주와 회사(이사)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현대 회사 구조에서는 이 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식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단순히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했거나 배후에서 주식을 소유한 자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례²⁵를 통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론은 책임 확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기업 형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지배권 기반 책임론은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기준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므로 경영 개입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수준과 구체적 행위의 인과관계를 반영하므로 형식적 지분율보다 실질적 지배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책임 부과 원리로 판단된다.

사용자 책임론은 법적 명확성을, 지배권기반책임론은 현실적 유연성을 가진다. 따라서 두 제도의 절충을 통해 지배주주의 경영 개입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차등화 하여 탄력적인 모델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분 보유 여부가 아닌, 실제 경영 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경영 전반에 사실상 개입하였는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개입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지배력에 비례하여 제한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²³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 도 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²⁴ 이종기,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제적 한계, 2021, p2

²⁵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 [공 2017 상,847]

3. 예상 효과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 원칙』에서 언급한 도덕적 해이의 억제, 기업 위험비용의 내부화, 사법효율성의 향상 외에도, 지배주주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경우에 여러 측면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변화를 기대 할 수 있다.

첫째, 소액주주의 보호와 주주평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배주주는 회사가 발굴한 사업을 자신의 소유로 하여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 회사에 투자한 다른 소액주주들은 경영에서 소외되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낮아짐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그 회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되고, 심지어는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주식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²⁶ 반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정보공개 및 감시 의무 등이 강화되면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은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 환경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 및 동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정보공개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 원칙이 실현된 대표적 판례가 있다.²⁷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동시에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 지배주주의 경영 개입이 책임으로 연결된다면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고려하게 된다.

이는 ESG의 관점에서는 조세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의 수준 높은 윤리관에 기초에 조세 부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정보의 공개'가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한 개념으로,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념을 발전시켜 표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들은 이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측면에서도 그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²⁸ ESG 정보의 공개 기준 등은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사항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세무 당국에서도 기업의 세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중이며, 세무정보의 공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²⁹

셋째, 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²⁶ 김선웅,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2005, p4

²⁷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 다 293213 판결 [상환금 청구의 소] [공 2023 하,1434]

²⁸ 이은서. "ESG 평가를 위한 기술적 및 지수적 도구의 활용 연구." 2024. p1

²⁹ 서정화, 이창규. (2023). ESG 세무정보공개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세무학연구, 40(2), p169-191.

지배주주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기업부실, 채권자 피해, 거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속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는 지배주주에 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성장,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VI. 결론

상법 제331조 주주 책임에 관한 규정은 현대 기업의 성장과 자본 유지, 활성화에 기여해온 핵심 제도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그 구조를 악용하여 기업의 피해를 외부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홈플러스 MBK 사태"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고, 이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기업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주주의 통제력은 현행 상법이 전제로 삼는 이사회 구조와 괴리가 발생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완석 교수가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에서 제안하는 지배권 기반 책임 제도는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업의 위험을 내부화하고 지배 주주의 경영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배권 기반 책임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배주주에게 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충실의무 부과, 과잉규제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공개, 감시 의무 강화 등의 간접적 방식 등의 확립과 사용자책임과의 절충적인 대안, 조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배권기반책임제도는 강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장치가 아닌, '채권자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투명성확장, 사회적 비용감소' 라는 발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VII. 소감 및 평가

202432324 공지윤 (A+)

서완석 교수님의 논문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을 읽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제도 도입에 대해 팀원들과 논의하였다. 처음에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도입된 취지가 기업 경영에 있어 발전을 장려하고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부담을 덜어주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기에 그대로 유지하되 주주유한책임을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무한책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절충안이 있을지 고민하였다. 회사법을 접한 시간도 짧고 회사법 관련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흐름을 잘못짚었던 부분들을 팀원들이 설명해 주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논문의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게 되었고 지배권 책임 제도가 절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주주유한책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여럿 찾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된 제도의 장점 등 효과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의 효과도 배울 수 있었다.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오류도 수정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현행 제도의 흠결과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공과목 중 첫 팀플을 진행하였는데,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시각을 넓힐 수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는 설득당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법학이 단순히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토론을 통해 사고를 뻗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

202432375유채연 (A+)

지배주주의 유한책임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읽고 팀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논문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리포트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료조사와 해당 파트에 관한 공부가 필요 했다. 이를 기반으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 이전보다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며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에 대하여 탐구해 보게되었다.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논문을 읽으며 보다 다양한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실례를 들어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처음으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우려도 컸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토의를 통해 서로의 견해에 찬성하기도, 지적 하기도 하며 혼자 하는 공부보다 더욱 많은 내용을 배우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팀 과제를 통해 상법에 대해 한 층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432413 최유민 (A+)

회사법은 민법이나 형법과는 달리 친숙하지 않아서 이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 내가 잘 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완석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법률용어를 알게 되어서 교수님 논문을 읽을 때나 다른 논문을 찾아볼 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지배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몰랐는데 교수님의 논문과 여러 논문을 찾아보니 주주무한책임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만 피해를 보고 회사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배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유한책임 제도는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사용자책임 이론과 지배권 기반 책임론이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책임론은 지배주주와 피지배 회사 관계를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고 회사가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이고 지배권 기반 책임론은 지배주주와 회사 및 제3자(채권자, 피해자)의 관계에서 지배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고 주주의 지배권 행사 자체를 근거로 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다. 사용자 책임론은 실정법상 지배주주와 피지배 회사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실정법상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사실상 이들의 관계를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으로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지배권 기반 책임 이론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를 구분하고 실질적인 통제력에 따라서 책임을 차등화할 수 있으므로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나는 지배권 기반 책임 이론이 가장 도입하기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이사의 충실의무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더 법이 세세하게 제정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본 영화가 도덕적 해이 관련 내용을 다루어서 흥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팀원을 구성하여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기는 주된 이유인 주주유한책임 이론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도의 장단점과 대체 이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유익했다.

202432419 표수현 (A+)

이번 과제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기업의 책임'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제 전에는 단순히 지배주주가 더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회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 그 책임은 채권자와 소액주주에게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완석 교수가 제안하는 지배권 기반 책임론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주주의 책임을 확장하는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배주주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영향력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임 확대와 기업 활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움을 실감하였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상사법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기업 활동과 사회적인 효과까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균형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 또한 단순히 혼자서 정리하고 작성하는 과제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절충하며, 관련 논문들과 뉴스 기사 등의 관련 문헌을 찾아보면서 실제 회사법에서 배운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의견을 합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번 회사법 과제는 한 학기 중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VIII. 참고문헌

1. 학술 논문

이윤석, 「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Vol.38 No.2, 한국상사법학회, 2019.08, p277-308.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 Tort, Contract, and Other Common Law Problems in Substantive Law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Company), 1987, p653-662

이장욱,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21.

권순일, 「주식 상법 : 회사 3」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p. 229.

이현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미국의 논의 및 시사점 검토, 2025, p.1

이현균,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p.14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p248

송호신, 한양법학 제23집, 2008, p254

미오도카 미치오, “주주총회에서의 다수결”, 1952, p29

송호신, 한양법학 제23집, 2008, p282

문정해, 주주행동주의 규제를 위한 충실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2009, p368-389

이현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미국의 논의 및 시사점 검토, 2025, p.1

김재범,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한국사법학회, 2015, p.188-189.

Seong-Ho Seo, Jin-Hwan Kim, 株主의 有限責任과 債權者保護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2010, p130.

서성호, "일본의 회사법상 지분회사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1호, 2009.3, p.184

양만식, 우리나라 법상 규정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36(3), 2022, p121

이중기,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제적 한계, 2021, p.2

김선웅,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2005, p.4

이은서, "ESG 평가를 위한 기술적 및 지수적 도구의 활용 연구.", 2024, p.1

서정화•이창규, ESG 세무정보공개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세무학연구, 40(2), 2023, p169-191.

2. 인터넷 기사

매일경제, [생활 속 회계이야기] 책임소재 분명한 주식회사, 투자금 모으기 `딱`,
<https://www.mk.co.kr/news/economy/9908371?utm>, 2021. 06. 11.

매거진 환경, 정채희 기자, '쪼개기 상장·떡튀'...카카오 소액주주 잔혹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59828?sid=101>, 2022. 2. 7

명지예, 매일경제, "개인들도 수백억원 손실 가능성...휴지조각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https://v.daum.net/v/20250305204501645>, 2025. 3. 5.

3. 기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5. 7. 2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손해배상(기)]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50722,20991,20250722\)/제382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50722,20991,20250722)/제382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 [공2017상,84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 청구의 소] [공2023하,1434]

JUSTIA US LAW, <https://law.justia.com/cases/delaware/supreme-court/1971/280-a-2d-717-3.html>

IX.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2025.11.3 (1차 논문 읽고 토론)

2025.11.9 (2차 토론, 절충된 방향성 결정)

2025.11.10 (리포트 작성 1차)

2025.11.19 (리포트 작성 2차)